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신 설></p>	<p><u>제24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p> <p>2.~10. (생략)</p> <p>②~⑤ (생략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</u>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 (생략)</p>	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</p> <p>2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</u>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p>